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
(김영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29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1. 7.

찬성자 : 김영배 · 김병기 · 박광운  
이해식 · 한병도 · 소병철  
유정주 · 이수잔<sup>배</sup> · 이수진  
이장섭 · 민형배 · 박홍근  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된 바 있음.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인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.

정책결정 과정에 산업안전 보건 관련 부처 및 노·사·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.

이에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정책 위원회와 지역별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함(안 제7조 부터 제7조의3까지).

##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제7조의3으로 하고, 제7조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7조의3(중전의 제7조)제2항 전단 중 “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”를 “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”로 한다.

제7조(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) ①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 수립 및 집행 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
2. 연도별 중대재해 발생현황 점검 및 감축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
3.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관계부처간 협조·조정에 관한 사항
4.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에 관련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
5. 직업성 질병의 예방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보호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

2.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및 경영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

3.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

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

⑥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의2(지역 산업안전보건협의회) 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이 조에서 “광역지자체”라 한다)에 산업안전보건협의회(이하 이 조에서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.

1. 관할 지역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
2. 관할지역 내 중대재해 발생현황 점검 및 감축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
3.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과 관련된 관할 지역 내 협력·조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장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광역지자체 부단체장이 공동으로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근로자 및 사업주 관련 단체의 장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2.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기관·단체의 대표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3. 산업 안전 및 보건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
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.

⑥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제7조제1항”을 “제7조의3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행	개      정      안
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	<p><u>제7조(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)</u></p> <p><u>①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 수립 및 집행 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<u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2. 연도별 중대재해 발생현황 점검 및 감축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3.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관계부처간 협조·조정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4.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에 관련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5. 직업성 질병의 예방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보호에 관한 사항</u></li> </ol>

6. 그 밖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

2.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및 경영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

3.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

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

⑥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의2(지역 산업안전보건협의회)

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이 조에서 “광역시 자체”라 한다)에 산업안전보건협의회(이하 이 조에서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.

1. 관할 지역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
2. 관할지역 내 중대재해 발생 현황 점검 및 감축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
3.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과 관련된 관할 지역 내 협력·조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

제7조(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·공표) ① (생략)  
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「산

성한다.

④ 위원장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광역지자체 부단체장이 공동으로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근로자 및 사업주 관련 단체의 장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
2.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기관·단체의 대표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
3. 산업 안전 및 보건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
⑤ 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에 실무협회를 둔다.

⑥ 협회와 실무협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의3(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·공표) ① (현행과 같음)  
 ② -----  
 -----이 법

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8조(협조 요청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~ ⑤ (생략)

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-----

-----.

제8조(협조 요청 등) ① -----  
-----제7조의3제1항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